

정 정 전 후 표

2017.07.17

- 대상펀드 : 흥국멀티플레이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 정정사유 : 1)종류 A-e, C-e, C-pe 신설 및 종류S, S-p 판매보수 인하
 2)신탁업자 보수 및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3)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및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 상세내역 :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요약정보 4. 운용전문인력 운용현황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	
[요약정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7.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0.41%이므로 6등급 중 매우낮은위험(6등급)에 해당하나,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5등급(낮은 위험)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0.55%이므로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종류C-p,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별첨 1>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별첨 2>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신설)	(종류)클래스 A-e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T538 (종류)클래스 C-e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T539 (종류)클래스 C-pe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T056
제 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신설)	(종류)클래스 A-e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T538 (종류)클래스 C-e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T539

		(종류)클래스 C-pe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T05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신설)	2017.07.20 : - 종류 A-e, C-e, C-pe 신설 및 종류S, S-p 판매보수 인하 - 신탁업자 보수 및 일반사무관리보수 인하 -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및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공통 - 보수 : <u>신탁(0.0200), 사무(0.0150)</u> ○종류 S - 보수 : <u>운용(0.0945), 판매(0.0650)</u> ○종류 S-p - 보수 : <u>운용(0.0945), 판매(0.0600)</u> - (신설)	○공통 - 보수 : <u>신탁(0.0150), 사무(0.0130)</u> ○종류 S - 보수 : <u>운용(0.0945), 판매(0.0550)</u> ○종류 S-p - 보수 : <u>운용(0.0945), 판매(0.0500)</u> ○종류 A-e 수익증권 - 가입자격 : 온라인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5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 선취수수료 : 납입금액의 0.5% 이내 - 보수율 : <u>운용(0.0945), 판매(0.0600), 수탁(0.0150), 사무(0.0130)</u> ○종류C-e 수익증권 - 가입자격 : 온라인 투자자 - 보수율 : <u>운용(0.0945), 판매(0.1100), 수탁(0.0150), 사무(0.0130)</u> ○종류C-pe 수익증권 -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중 온라인 투자자 - 보수율 : <u>운용(0.0945), 판매(0.1000), 수탁(0.0150), 사무(0.0130)</u>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0.41%이므로 6등급 중 매우낮은위험(6등급)에 해당하나,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5등급(낮은 위험)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0.55%이므로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 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종류별가입자격 (신설)	2)종류별가입자격 - 종류 A-e : 온라인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5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 종류 C-e : 온라인 투자자 - 종류 C-pe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중 온라인 투자자
13.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신설)	○종류 A-e 수익증권 - 가입자격 : 온라인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5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 선취수수료 : 납입금액의 0.5% 이내 ○종류C-e 수익증권 - 가입자격 : 온라인 투자자 -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종류C-pe 수익증권 -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중 온라인 투자자 -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별첨 3>	<별첨 4>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별첨 5>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별첨 6>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 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 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 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 계액(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u>개인소득세율(최 고한도 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u> 됩니 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 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 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 소득(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 계액(이자,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 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u>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u> 됩니다.
나. 과세	4) 종류C-p,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별첨 1>	4) 종류C-p, <u>종류C-pe</u> ,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 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별첨 2>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1)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 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 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 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2)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 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 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 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 서는 아니 된다. 4)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 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 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 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 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운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거래 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배분계획과 달리 매매를 위탁할 수 있다. 5)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5) (삭제) <별첨 7>

[간이투자설명서]

정정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갱신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보수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5.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요약정보]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7. 투자위험 등급 분류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0.41%이므로 6등급 중 매우낮은위험(6등급)에 해당하나, 주요 투자대상 자산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5등급(낮은 위험)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3년이 경과된 집합투자기구로서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 0.55%이므로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1. 과세	*종류C-p,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별첨 1>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별첨 2>

< 별첨 1 - 정정 전 >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경우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외수령시 과세 (부득이한 경우)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별첨 2 - 정정 후 >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다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 인 거주자의 경우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하

A	0.0945	0.1200	0.015	0.013	0.0029	0.2454	0.2596	0.0085
A-e	0.0945	0.0600	0.015	0.013	-	0.1825	0.1825	-
C	0.0945	0.2205	0.015	0.013	0.003	0.346	0.3607	0.0114
C-e	0.0945	0.1100	0.015	0.013	-	0.2325	0.2325	-
C-p	0.0945	0.2000	0.015	0.013	0.003	0.3255	0.3403	0.0189
C-pe	0.0945	0.1000	0.015	0.013	-	0.2225	0.2225	-
C-w	0.0945	0.0000	0.015	0.013	0.003	0.1255	0.1402	0.0197
C-f	0.0945	0.0200	0.015	0.013	0.003	0.1455	0.1602	0.019
S	0.0945	0.0550	0.015	0.013	0.0029	0.1804	0.2051	0.0166
S-p	0.0945	0.0500	0.015	0.013	0.0029	0.1754	0.2002	0.0189
A-g	0.0945	0.0700	0.015	0.013	-	0.1925	0.1995	-
C-g	0.0945	0.1300	0.015	0.013	-	0.2525	0.2595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	사유 발생시

<별첨 5 - 정정 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종류 A	10	26	81	142	321
	종류 C	-	36	113	198	447
	종류 C-p	-	34	107	187	421
	종류 C-w	-	14	43	75	169
	종류 C-f	-	16	49	86	194
	종류 S	-	19	61	107	242
	종류 S-p	-	20	62	108	245
	종류 A-g	6	21	66	115	261
	종류 C-g	-	26	82	143	32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종류 A	10	27	83	146	330
	종류 C	-	37	116	203	457
	종류 C-p	-	35	109	191	431
	종류 C-w	-	14	45	79	179
	종류 C-f	-	16	52	90	204
	종류 S	-	19	61	107	242
	종류 S-p	-	20	64	113	255
	종류 A-g	6	21	66	115	261
	종류 C-g	-	26	82	143	322

<별첨 6 - 정정 후>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천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종류 A	10	26	81	142	321
	종류 A-e	5	19	60	105	238
	종류 C	-	36	113	198	447
	종류 C-e	-	23	73	128	289
	종류 C-p	-	34	107	187	421
	종류 C-pe	-	22	70	122	277

	종류 C-w	-	14	43	75	169
	종류 C-f	-	16	49	86	194
	종류 S	-	19	61	107	242
	종류 S-p	-	20	62	108	245
	종류 A-g	6	21	66	115	261
	종류 C-g	-	26	82	143	322
판매수수료 및보수· 비용(피투자집합투 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종류 A	10	27	83	146	330
	종류 A-e	5	19	60	105	238
	종류 C	-	37	116	203	457
	종류 C-e	-	23	73	128	289
	종류 C-p	-	35	109	191	431
	종류 C-pe	-	22	70	122	277
	종류 C-w	-	14	45	79	179
	종류 C-f	-	16	52	90	204
	종류 S	-	19	61	107	242
	종류 S-p	-	20	64	113	255
	종류 A-g	6	21	66	115	261
	종류 C-g	-	26	82	143	322

< 별첨 7 >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지분증권	리서치자료 제공 능력, 투자정보 제공 및 주문집행의 신속·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채무증권	정보제공 능력, 매매체력의 신속·정확성, 거래보안유지, 결제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평가·선정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규약]

정정 항목	정정 전	정정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 (생략) 10. (신설) 11. (신설) 12. (신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 (현행과 같음) 10. 종류 A-e 수익증권 : 온라인판매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납입금액의 100분의 0.5이내 징구되는 수익증권 11. 종류 C-e 수익증권 : 온라인 투자자 12. 종류 C-pe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중 온라인 투자자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생략) 1~9. (생략) 10. (신설)	①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10. 종류 A-e 수익증권

	11. (신설) 12. (신설)	11. 종류 C-e 수익증권 12. 종류 C-pe 수익증권
제39조(보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가~나. (생략)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2. 종류C 수익증권 가~나. (생략)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3. 종류C-p 수익증권 가~나. (생략)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4. 종류C-w 수익증권 가~나. (생략)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5. 종류C-f 수익증권 가~나. (생략)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6. 종류S 수익증권 가. (생략)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7. 종류S-p 수익증권 가. (생략)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8. 종류 A-g 수익증권 가~나. (생략)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9. 종류 C-g 수익증권 가~나. (생략)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5 10. (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 2. 종류C 수익증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 3. 종류C-p 수익증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 4. 종류C-w 수익증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 5. 종류C-f 수익증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 6. 종류S 수익증권 가. (현행과 같음)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5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 7. 종류S-p 수익증권 가. (현행과 같음)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 8. 종류 A-g 수익증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 9. 종류 C-g 수익증권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 10. 종류A-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945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0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

	<p>11. (신설)</p> <p>12. (신설)</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p> <p>11. <u>종류C-e 수익증권</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94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10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p> <p>12. <u>종류C-pe 수익증권</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945</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1.00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150</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30</p>
<p>제40조(판매수수료)</p>	<p>① (생략)</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종류 수익증권 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2. (생략)</p> <p>3. (신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호의 종류 수익증권 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종류 A-e 수익증권</u> : 납입금액의 100분의 0.5 이내</p>
<p>제52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C-p, 종류S-p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	<p>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C-p, <u>종류C-pe</u>, 종류S-p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p>